

## 201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공고

201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현대화사업을 공고 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및 상인회, 상인연합회 및 지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 기한 내(2014.1.6~2.7) 신청사업

분 야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 원 한 도	지 원 조 건
마케 팅	① 공동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 벤트행사, 홍보 및 특화사업, 특가판매 등 마케팅 활동지원  - 경품행사, 공동쿠폰, 광고·홍보, 패션쇼, 특가판매 등 가능	시장규모별 8백만원 ~ 40.5백만원	국비 80~90% 상인회 20~10% *지원횟수별 국비 지원비율 차등 (자생력 제고)
상인 교육 및 시장 관리	② 상인대학	○ 경영혁신, ICT활용, 의식혁신, 상인조직·시장활성화,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교육 지원	20~25회 교육 (40~50시간)	전액 국비지원
	③ 상인조직 역량강화	○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 하는 상인회에 인건비 보조	45천원~1,155천원 (월 165만원 기준)	국비 30~70% 상인회 70~30% *지원횟수별 국비 지원 차등
홍보	④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홍보·관촉을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시장 10곳, 상인 50명 이상 참가)	전시회당 48백만원 이내	국비 70% 상인회·지자체 30%

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특성화	⑤ 문화관광형 시장	○ 시장 인근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해 장보기·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	시장당 3년간 700백만원 내외	국비 50% 지방비 50% (단, 3년차는 국비 30%, 지방비 70%)
	⑥ 상권활성화 구역	○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인접 소상공인이 포함된 상권구역의 활성화 지원(경영혁신 중심)	구역당 3년간 1,800백만원 이내	국비 100%
	⑦ ICT전통시장	○ 고객과 상인간 소통(시장·상품 정보 등)을 촉진하여 시장·점포·상권활력을 높이는 ICT가 융합된 전통시장 육성  - ICT카페, 모바일POS, 스마트전단지·쿠폰 발행, ICT교육 등 지원	시장당 30백만원 이내	국비 100% (단, 모바일POS는 국비 80%, 상인 10%)

※ 문화관광형시장(문전성시 포함)으로 선정된 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구역 내 시장은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제외될 수 있음

## □ 수시신청 사업

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교육연수	① 상인 교육 연수	○ 맞춤형교육, ICT(정보화)교육 - 상인대학원, 선진시장 탐방, 워크숍, 청년상인아카데미 등은 별도 공고 예정	【예산범위내】 교육분야별 별도 안내	국비 100% (선진시장 탐방은 일부 참가자 부담)
자문지도	② 시장 자문 점포 지도	【자문】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상권개발 등 자문  【지도】 점포경영, 상품디스플레이 등 지도	【예산범위내】 -자문 연간 8일 이내 -지도 연간 2회 이내	국비 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kmdc.or.kr)에 공지

## 2

## 지원대상

### □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외 관련 단체 및 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상권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 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

### □ 지원 우대 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 3

## 행정사항

- 국고보조사업 집행기관의 장은 단위사업별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세부 집행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4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팩스
- 신청 기간 및 절차

접수처	대상사업	신청기간	신청절차
지방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시장	2014. 1. 6(월) ~ 2. 7(금)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상인조직 역량 강화, ICT전통시장		상인회 → 시·군·구 (추천) → 공단
	우수시장상품전시회		상인연합회지회 → 시·도 → 공단
	상권활성화구역		시·군·구 → 시·도 → 공단
	상인교육 일부(맞춤형, ICT정보화), 자문·점포지도 일부		수시신청 (예산한도내)
	상인대학원, 선진시장탐방, 청년상인아카데미, 워크숍, 시장권설립법인,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별도 공고”

- 접수처

기관명	담당사업명	전화번호	FAX	주소
지방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시장	별도안내 (p.37 문화관광형시장 접수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공동마케팅, 우수시장상품전시회, ICT전통시장	042-363-7622~4	042-363-7595	(우)301-722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3층
	상인대학, 상인조직역량강화, 점포지도, 기타교육	042-363-7862~3	042-363-7595	
	문화관광형시장	042-363-7652	042-363-7598	
	상권활성화구역	042-363-7662	042-363-7598	
	연구 및 자문	042-363-7874	042-363-7598	

\* 자세한 지원절차·공고내용·신청서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알림소식→새소식→공지사항” 및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kmdc.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2014년 1월 6일

##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서식

### [별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단위사업별 지원계획 ..	1P
1. 공동마케팅 .....	1P
2. 상인교육 .....	3P
3. 상인조직 역량강화 .....	5P
4.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	6P
5.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7P
6. 상권활성화구역 .....	10P
7. ICT전통시장 .....	11P

### [별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신청 총괄표(지자체용) ...	13P
--------------------------------------	-----

### [별지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통합 신청서(상인회용) ..	14P
<별지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신청 총괄표 ...	15P
<별지 3-2>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계획서 .....	16P
<별지 3-3> 상인대학 설치 신청서 .....	18P
<별지 3-4> 시장매너저 활용계획서 .....	19P

[별지 4]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	22P
-------------------------------	-----

[별지 5]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	25P
---------------------------------	-----

[별지 6]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신청서 .....	38P
----------------------------	-----

[별지 7] ICT전통시장 육성 지원신청서 .....	51P
-------------------------------	-----

[별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단위사업별 지원계획**

1. 공동마케팅

구분	내용																																																																																										
집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예산	○ 34.7억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																																																																																										
지원내용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홍보사업, 특화사업, 특가 판매 판촉·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																																																																																										
지원조건	<p>○ 국비 80~90%, 상인회 20~10% (최근 3년간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p> <p style="text-align: center;"><b>&lt;지원실적별 지원한도&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국비 지원한도</th> <th>상인회 최소자부담</th> </tr> </thead> <tbody> <tr> <td>- 신규 또는 1회 지원 받은 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2회 지원 받은 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85%</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3회 지원 받은 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body> </table> <p>* 단, 2013년 공동마케팅 우수사례 선정 시장은 국비 90%지원</p> <p>※ 공동마케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상인회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의무시행 (총 3회 예정으로 국비 별도지원)</p>	구분	국비 지원한도	상인회 최소자부담	- 신규 또는 1회 지원 받은 시장	90%	10%	- 2회 지원 받은 시장	85%	15%	- 3회 지원 받은 시장	80%	20%																																																																														
구분	국비 지원한도	상인회 최소자부담																																																																																									
- 신규 또는 1회 지원 받은 시장	90%	10%																																																																																									
- 2회 지원 받은 시장	85%	15%																																																																																									
- 3회 지원 받은 시장	80%	20%																																																																																									
국비 지원한도	<p>○ 시장·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 구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구분 점포수</th> <th colspan="3">소형 299개 이하</th> <th colspan="3">중형 300개~799개</th> <th colspan="3">대형 800개 이상</th> </tr> <tr> <th colspan="3">최근 3년간지원 횟수</th> <th colspan="3">최근 3년간지원 횟수</th> <th colspan="3">최근 3년간지원 횟수</th> </tr> <tr> <th>1회</th> <th>2회</th> <th>3회</th> <th>1회</th> <th>2회</th> <th>3회</th> <th>1회</th> <th>2회</th> <th>3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전통시장 상점가</td> <td>국비 지원한도</td> <td>9,000</td> <td>8,500</td> <td>8,000</td> <td>18,000</td> <td>17,000</td> <td>16,000</td> <td>27,000</td> <td>25,500</td> <td>24,000</td> </tr> <tr> <td>최소 자부담</td> <td>1,000</td> <td>1,500</td> <td>2,000</td> <td>2,000</td> <td>3,000</td> <td>4,000</td> <td>3,000</td> <td>4,500</td> <td>6,000</td> </tr> <tr> <td>최소 총사업비</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30,000</td> </tr> <tr> <td rowspan="3">활성화구역</td> <td>국비 지원한도</td> <td>18,000</td> <td>17,000</td> <td>16,000</td> <td>30,600</td> <td>28,900</td> <td>27,200</td> <td>40,500</td> <td>38,250</td> <td>36,000</td> </tr> <tr> <td>최소 자부담</td> <td>2,000</td> <td>3,000</td> <td>4,000</td> <td>3,400</td> <td>5,100</td> <td>6,800</td> <td>4,500</td> <td>6,750</td> <td>9,000</td> </tr> <tr> <td>최소 총사업비</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34,000</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45,000</td> </tr> </tbody> </table> <p>* 점포수는 실제 영업 점포수 기준</p>	구분 점포수	소형 299개 이하			중형 300개~799개			대형 800개 이상			최근 3년간지원 횟수			최근 3년간지원 횟수			최근 3년간지원 횟수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전통시장 상점가	국비 지원한도	9,000	8,500	8,000	18,000	17,000	16,000	27,000	25,500	24,000	최소 자부담	1,000	1,500	2,000	2,000	3,000	4,000	3,000	4,500	6,000	최소 총사업비	10,000			20,000			30,000			활성화구역	국비 지원한도	18,000	17,000	16,000	30,600	28,900	27,200	40,500	38,250	36,000	최소 자부담	2,000	3,000	4,000	3,400	5,100	6,800	4,500	6,750	9,000	최소 총사업비	20,000			34,000			45,000		
구분 점포수	소형 299개 이하			중형 300개~799개			대형 800개 이상																																																																																				
	최근 3년간지원 횟수			최근 3년간지원 횟수			최근 3년간지원 횟수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전통시장 상점가	국비 지원한도	9,000	8,500	8,000	18,000	17,000	16,000	27,000	25,500	24,000																																																																																	
	최소 자부담	1,000	1,500	2,000	2,000	3,000	4,000	3,000	4,500	6,000																																																																																	
	최소 총사업비	10,000			20,000			30,000																																																																																			
활성화구역	국비 지원한도	18,000	17,000	16,000	30,600	28,900	27,200	40,500	38,250	36,000																																																																																	
	최소 자부담	2,000	3,000	4,000	3,400	5,100	6,800	4,500	6,750	9,000																																																																																	
	최소 총사업비	20,000			34,000			45,000																																																																																			
신청 및 지원절차	<p>상인회 → 시·군·구(추천) → 공단 → 현장실사(공단)→선정평가위원회(공단) → 지원대상 확정(중기청) → 세부시행계획 제출(상인회→공단) → 시행승인(공단→상인회)→ 선급금 신청(상인회→공단) → 선급금(70%) 교부(공단→상인회) → 사업시행(상인회) → 정산보고(상인회→공단) → 정산검토 및 잔금(30%) 교부(공단→상인회) → 사업평가(공단)</p> <p>* 현장실사는 신규신청 시장 등에 한해 실시할 수 있음</p>																																																																																										
구비서류	○ [별지3], <별지3-1>, <별지3-2>																																																																																										

**<세부 지원 단위사업>**

단 위 사 업	세 부 내 용
<b>A. 이벤트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확대유치를 위한 경품행사 및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고객에게 경품권 지급 후 추첨하여 경품 지급하는 행사 (경품 지급 시 수령자 서명 지급대장 작성)</li> </ul> </li> <li>○ 콘테스트, 전시회 개최, 고객 대상 각종 취미교실(기존시설 활용) (기획료, 감사비, 홍보비, 장치비, 인건비 등 직접비만 지원)</li> <li>○ 유치원생 및 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시장 장보기 및 1일 점주 체험 등 (장보기 비용 1,000천원 이하로 제한, 수령자 서명 대장 필요)</li> </ul> </li> <li>○ 대학 동아리 등 연계 전통시장 문화공연이벤트 개최</li> <li>○ 공동쿠폰 발행 및 홍보(쿠폰인쇄비, 디자인비, 가맹점표시, 홍보비, 쿠폰 이용 경품비 등 직접비만 지원 / 쿠폰 보상비 제외)</li> <li>○ 기타 이벤트성 사업</li> </ul>
<b>B. 홍보사업</b> (총사업비의 5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및 송출</li> <li>○ 시장 및 상품 홍보를 위한 전단지·배포비</li> <li>○ 시장홍보 소식지,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배포비</li> <li>○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제작 등 온라인 홍보</li> <li>○ BI·CI개발(로고, 브랜드, 캐릭터), 시장로고송 제작·보급</li> <li>○ 테마골목 브랜드 개발(상호, 상표, 로고 등)</li> <li>○ 기타 홍보성 사업</li> </ul>
<b>C. 특화사업</b> (시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복 패션쇼, 의류 패션쇼 등 각종 상품 쇼</li> <li>○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특화사업</li> <li>○ 기타 시장별 특화사업</li> </ul>
<b>D. 특가판매</b> (특가용 상품 구입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자체상품, 상인회 공동구매 상품, 정부비축물 등을 이용한 특가판매로 회당 총 2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지원 (행사홍보, 도우미, 판매대 임차 등 직접비만 지원)</li> </ul>
<b>E. 기타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만족도 등 고객 관련 조사</li> <li>○ 고객선지키기(캠페인비용 등)</li> <li>○ 신용카드 거래환경 개선 촉진 행사</li> <li>○ 자율포장·계량대, POP제작(기기구입제외, 프로그램가능)</li> <li>※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li> </ul>

## 2. 상인교육

### ○ 지원규모

구 분	내 용
집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예산	○ 36억원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 내 상인, 종업원 등
지원과정	○ 상인대학, 맞춤형교육, ICT(정보화)교육 등

### ○ 과정별 신청방법

교육과정	내 용	신청방법
상인대학 (40~50시간)	○ 상인대학설치 선정시장(전국 100곳) - 점포경영,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 종합교육	통합공고 (공단으로 신청)
맞춤형교육 (2~20시간)	○ 교육경험이 없는 시장, 업종전문, 실무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등(2시간~10시간)	연중수시 (공단으로 신청) ※ 예산소진시까지
ICT(정보화)교육 (12시간이내)	○ 상인 정보화 능력배양 및 점포경영에 활용 - PC 또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상인대학원 (60시간 내외)	○ 상인최고경영자과정 : 상인회장 및 임원, 상인대학 졸업상인 등 (2곳) - 리더십, 시장운영 등 상인지도자 육성교육 등	별도공고 (공단으로 신청)
선진시장탐방	○ 국외 선진시장을 찾아가 시설개선, 경영기법 등을 벤치마킹	
워크숍 및 직무교육	○ 전국 상인들의 우수사례 공유,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설명, 담당공무원 교육 등 포함	



○ 상인대학

구 분	내 용
설치규모	○ 100곳
지원예산	○ 20억원
설치대상	○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 중 선정
교육내용	○ 시장과 점포 활성화를 위한 종합교육(견학 포함) - (기본과정) 의식혁신, 고객만족, 마케팅기초, 상인정신 등 - (심화과정) 마케팅심화, 포장·진열기법, 조직관리, 선진지견학 등
운영방식	○ 상인회 또는 시장 인접 교육장을 이용, 교육기관이 찾아가서 총 20~25회(40~50시간)의 교육시행(1일 2시간)
지원조건	○ 전액 국비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절차 상인회 → 시·군·구(추천) → 공단 → 현장실사(공단) → 선정평가위원회(공단) → 지원대상 선정(중기청) → 교육기관지정(공단) → 교육계획수립(기관) → 교육계획서 제출(기관→공단) → 시행승인(공단) → 교육시행(기관) * 교육운영책임자(기관)는 별도 공고 및 선정 후 지정 예정
우선 또는 우대사항	○ 상인대학 개설 실적이 없는 시장 ○ 최근 3년 내 상인교육 실적이 많은 시장(상인대학 外), 교육장 보유시장 및 교육장 확보(무료임차) 시장
구비서류	○ [별지3], <별지3-1>, <별지3-3>
집행 및 관리	○ 교육운영책임자*가 시장 상황에 맞는 교육 기획·시행(상인회 협의) - 참가희망자가 40명(100점포 미만시장은 30명) 이상 신청시에만 교육시작(미만시 포기로 간주) - 교육일수의 2/3이상 출석시 수료로 인정(우수자는 표창)
참조사항	○ 교육실적이 없는 신규시장 등은 교육여건 등 현장조사 ○ 신청시장이 많을 경우 시·도별 시장 및 상점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교육운영책임자 : 책임교수 또는 교육기관(대학 등)

### 3. 상인조직 역량강화

구 분	내 용												
지원예산	○ 18억원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12개월)												
지원규모	○ 약 145명 내외												
지원내용	○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인회에 최대 국비 월 1,155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회수별 차등 지원(급여 165만원기준)												
국비지원한도	<p>○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거(신청전) 지원실적</th> <th>국비 지원한도</th> <th>지자체 또는 상인회</th> </tr> </thead> <tbody> <tr> <td>- 1회 이하 지원 받은 시장</td> <td>월1,155천원(70%)</td> <td>30%(상인회 최소 10%)</td> </tr> <tr> <td>- 2회 지원 받은 시장</td> <td>월825천원(50%)</td> <td>50%(상인회 최소 10%)</td> </tr> <tr> <td>- 3회 지원 받은 시장</td> <td>월495천원(30%)</td> <td>70%(상인회 최소 10%)</td> </tr> </tbody> </table> <p>* 단,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도상인연합회는 지원회수와 관계없이 국비 70% 지원 * 지원금은 순수인건비의 용도로만 지원하고,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료(상인회부담분)와 출장비등의 비급여적 인건비등은 지원제외</p>	과거(신청전) 지원실적	국비 지원한도	지자체 또는 상인회	- 1회 이하 지원 받은 시장	월1,155천원(70%)	30%(상인회 최소 10%)	- 2회 지원 받은 시장	월825천원(50%)	50%(상인회 최소 10%)	- 3회 지원 받은 시장	월495천원(30%)	70%(상인회 최소 10%)
과거(신청전) 지원실적	국비 지원한도	지자체 또는 상인회											
- 1회 이하 지원 받은 시장	월1,155천원(70%)	30%(상인회 최소 10%)											
- 2회 지원 받은 시장	월825천원(50%)	50%(상인회 최소 10%)											
- 3회 지원 받은 시장	월495천원(30%)	70%(상인회 최소 10%)											
시장매니저 자격요건	<p>○ (기본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PC활용 가능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li> <li>- (민간) 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유통, 마케팅, 기획·총무, 회계, 세무, 영업관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li> </ul> <p>○ (제한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미복권자, 금고이상의 형 종료 후 3년 미경과 또는 유예기간 중인 자, 최근 2년내 퇴직자로 기업체 등에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자</li> </ul>												
신청 및 지원절차	<p>신청 및 채용후보자 추천(상인회→지자체) → 접수(공단) → 근무환경실사(공단) → 선정평가위원회(공단) → 최종 선정(중기청) → 선정시장 및 채용자 발표(공단) → 국비 교부신청(상인회→공단) → 국비 교부(공단→상인회) → 사업시행(상인회) → 결과보고 및 정산(상인회→지자체·공단)</p> <p>* 개별 상인회는 시·군·구, 시도지회는 시·도를 경유해 신청 * 근무환경실사는 신규신청시장 등 선별적으로 실시</p>												
채용방법	<p>○ 상인회에서 지원신청시 자격요건을 갖춘 채용희망자를 지자체로 추천</p> <p>○ 지자체에서는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공단으로 추천</p> <p>○ 중기청 및 공단에서 시장 및 추천 인력 평가 후 선정</p>												
지원우대	<p>○ (시장) 지원 실적이 없는 시장, 상근 인력이 없는 시장</p> <p>○ (시장매니저) 근무능력이 우수하여 포상(정부 또는 지자체)을 수여한 자, 전산 등 근무관련 자격증 보유자</p>												
구비서류	○ [별지3], <별지3-1>, <별지3-4>												

#### 4.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구 분	내 용
집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예산	○ 1.5억원
지원대상	○ 전국상인연합회 지회
지원내용	○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전시·판매 지원 - 기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등 직접비용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상인 30% * 시장 10곳 이상, 상인 50명이상 참여(제주 제외)
국비지원한도	○ 총 3개 지회 이내로, 지회당 최대 48백만원 이내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지회→시·도→공단) → 현장실사(공단) → 선정평가위원회(공단) → 최종 선정(중기청) → 사업시행(지회) → 결과보고 및 정산(지회→공단)
구비서류	○ [별지 4]
집행 및 관리	○ 기획홍보, 전시, 임대, 부스설치비 등 직접비용에 한해 지원 ○ 지역 특산품, 전통시장 판매비중이 높은 상품의 전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시관 구성 -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지역특산품 등의 전시기회 확대를 위해 음식 등 먹거리 전시면적을 총 전시면적의 30% 이하로 제한 - 명품관(우수특산품, 프랜차이즈 가능 품목) 구성 및 타 지역 우수상품 교차전시 -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전시회 운영 가능 ○ 사치, 향락적 제품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제품의 전시·판매 금지 ○ 전시회 종료 후 사업비 정산서는 해당 시·도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5.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 23개 내외
지원예산	○ 189억원
지원대상	○ 전통시장
지원분야	○ (문화접목형) 지역 문화, 역사, 풍속 등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 ○ (관광접목형) 지역 유적, 관광자원, 지역특산품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 ○ (국제명소형) 국제적 인지도 향상으로 외국 관광객이 많은 찾는 시장
지원내용	○ (특성 발굴·개발) 시장고유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조성 ○ (관광자원 개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 (시장 자생력 육성·강화) ICT 융합, 동아리육성,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마케팅·교육·컨설팅·홍보 등을 지원
지원조건 및 금액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국비기준) - 1년차~2년차(국비 50%, 지방비 50%) 3년차(국비 30% 이내, 지방비(자부담 포함) 70% 이상) * 국비는 민간 경합보증금으로 건축비 등 자본형성의 자본경비는 사용불가 ○ (지원금액) 예산범위내에서 시장별 3년간 최대 7억원 내외 (국비기준)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시·군·구 → 시·도(추천) → 지방청(신청) → 지방중기청 및 시·도 합동(평가) → 공단(서류심사) → 지방청 → 중기청, 공단 → 중기청(선정 및 결과통보)
우대사항	○ 정부포상 ○ 사업수행 우수실적
구비서류	○ [별지 5]
집행 및 관리	○ 지자체에서 지원체계 및 조직도를 구상하여 작성 - 관련부서 지원TF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유무형 결과물을 지자체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함 -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방비 확보
참조사항	○ 사업수행자(사업단장)는 시장 선정 후, 공개경쟁 모집하여 공단과 용역계약 체결 후 사업 추진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세부내용

□ 지원규모 : 신규시장 23곳 내외

□ 지원분야

- (문화접목형시장) 지역 문화, 역사, 풍속 등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
- (관광접목형시장) 지역 유적, 관광자원, 지역특산품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
- (국제명소형시장) 국제적 인지도 향상으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

□ 지원한도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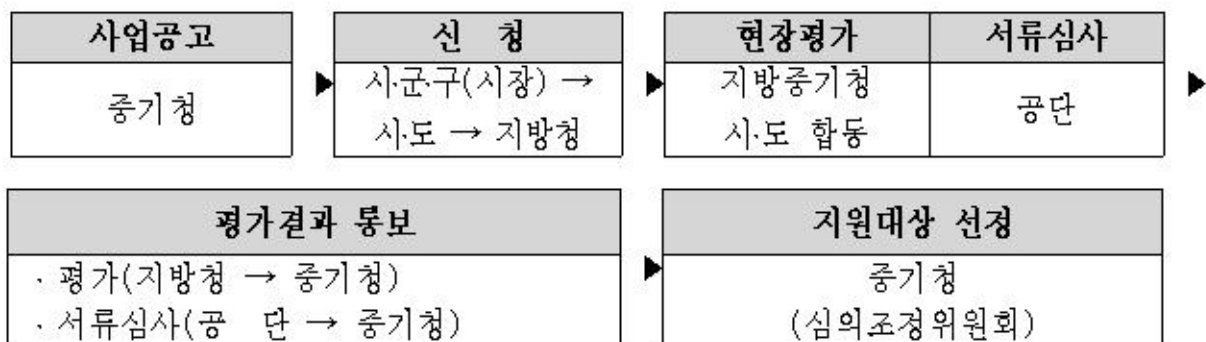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에서 시장별 최대 3년간 7억원 내외(국비기준) 지원
- 1년차에는 시장별 규모와 사업계획, 2년차에는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3년차에는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국비기준)

- 총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기존에 문광형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타 부처 사업(문전성시 등)을 지원받은 시장은 제외
- 문광형시장 육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필요한 공공시설, 편의 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 선정절차



## □ 평가기준

- 평가내용 : 평가(100%), 서류심사(가감점, 적격여부 판정)
- 평가 기준

구 분	배점	평가요소
시장의 고유한 특성	20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특산품, 문화, 전통 등), 기반인프라 시설 보유상태 등
시장의 입지 및 환경	20	지역의 역사관광문화 등과의 연계 가능성
시장 사업추진 역량	20	상인조직 역량(가입률, 회비 납부율, 조직 구성도 등), 홍보·마케팅 수행능력, 시장활성화 정도(상품권, 카드 가맹율, 상인교육 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20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상인회와의 소통능력, 사업단 구성·운영 전략, 예산확보 가능성 등
사업계획발표	20	사업의 이해, 비전수립, 계획의 완성도,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 ○ 서류심사

- 가점(5점) : 정부포상, 전통시장 인증시장, 사업수행 우수실적 등
- 감점(5점) : 정부지원 사업포기, 지침위반 및 상인간 분쟁 등
- 적격여부 : 지원대상 및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 ○ 신청

- 시·군·구청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시·도지사는 전통시장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1~3개시장 추천

## 6. 상권활성화구역

구 분	내 용
집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예산	○ 36억
지원대상	<p>○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4호를 만족하는 곳</p> <p style="text-align: center;">————— &lt;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gt;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li> <li>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는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li> <li>4.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li> </o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 사업</li> <li>○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li> <li>○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li> <li>○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li> <li>○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li> <li>○ 상권관리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li> </ul>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당 3년간 총 18억원 이내(연 6억원 한도, 국비 100%)</li> <li>* 민간경상보조금이므로 토지구입, 건물신축 등 자본 형성의 사업비로 사용 불가</li> <li>*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당해년도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li> </ul>
신청 및 지원절차	<p>상인회 또는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중기청 → 서류 및 현장실사(공단) → 선정평가위원회(공단) → 지원대상 선정(중기청) → 구역승인요청(시군구→시도) → 구역승인협의(시도/중기청) → 구역지정승인(시도→시군구) → 구역지정(시군구) → 상권관리기구설치(지방중기청의 설립허가에 따라 시군구가 설치) → 사업계획수립(시군구) → 사업계획승인신청(시군구) → 시도(중기청과 협의) → 사업계획승인(시도) → 사업비신청(상권관리기구) → 국비 교부(공단→상권관리기구) → 사업집행(상권관리기구)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공단) → 정산 검토(공단) → 중기청</p> <p>* 구역지정 및 상권관리기구 설립 절차 병행</p>
구비서류	○ [별지 6]

## 7. ICT전통시장 육성

구 분	내 용
집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예산	○ 30억 (130곳 내외)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제2조에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단,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곳은 제외
지원내용	○ (모바일POS기)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모바일 쿠폰 활용 등이 가능한 POS기 지원(1,000대 내외) ○ (ICT카페) 고객은 시장·점포의 정보취득, 상인은 세일행사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ICT기기(PC, 와이파이 등) 지원 ※ 인터넷회선 사용료는 상인회 부담 ○ (스마트전단지·쿠폰) 고객확대와 DB확보를 위한 쿠폰발행과 시장 및 점포를 홍보할 수 있는 스마트 전단지를 제작지원 ○ (ICT활용교육) ICT카페, 스마트전단지·쿠폰 등의 활용역량을 높이도록 ICT교육 지원
지원조건	○ 국비 90%, 상인자부담 10% : 모바일POS기 ○ 전액 국비 지원 : ICT카페, 스마트전단지·쿠폰, ICT활용교육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상인회) → 시·군·구(추천) → 공단 → 현장실사(공단)→선정평가위원회(공단) → 최종 선정(중기청) → 세부사업계획제출(상인회→공단) → 사업 시행승인(공단→상인회)→사업시행(상인회, 추진단)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상인회, 추진단→공단) → 사업평가(공단)
구비서류	○ [별지3], <별지3-1>, <별지3-5>



**<세부 지원 안내>**

단위사업	세 부 내 용
<b>ICT카페</b> (130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고객이 시장과 점포의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취득하며, 상인들은 ICT역량을 높여 스마트한 전통시장 이미지 확산(130곳)</li> <li>○(내용) PC(태블릿 등), 프린트, 코팅기, 와이파이 설치 등</li> <li>○(제한) ICT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 고객센터 등이 있는 곳만 신청</li> <li>○(한도) 시장당 500만원 이내</li> <li>○(조건) 전액 국비 지원</li> </ul>
<b>모바일POS기</b> (1,000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급, 모바일 쿠폰활용, 재고관리 등이 가능한 POS기 설치를 지원해 점포경영의 ICT 접목 강화</li> <li>○(기종) 설치기종은 공단에서 선정한 기기</li> <li>○(대상) POS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별점포(1,000점포내외)</li> <li>○(조건) 국비 90%(90만원 이내), 자부담 10%</li> </ul>
<b>스마트전단지 제작</b> (500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전단지 제작, 무료로 보급해 스마트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li> <li>○(추진)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한 전단지 품(500여종)을 공단에서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 또는 상인회에 무료 제공</li> <li>○(조건) 전액 국비 지원</li> </ul>
<b>스마트 쿠폰</b> (130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스마트폰에 탑재가능한 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스마트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li> <li>○(추진)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스마트쿠폰 발행·활용(130곳)</li> <li>○(조건) 전액 국비 지원</li> </ul>
<b>ICT활용교육</b> (130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상인 및 상인회의 ICT카페, 스마트전단지, 스마트쿠폰 등의 활용능력 높이고 ICT전통시장 지원 성과 제고</li> <li>○(내용) 스마트전단지 활용법, 스마트 쿠폰 관리방법 등</li> <li>○(조건) 전액국비 지원</li> </ul>
<b>ICT 추진단</b>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추진단) ICT 전문인력, 대학생 서포터즈 구성·운영(100명내외)</li> <li>○(선정) ICT전통시장 선정 결과를 고려해 공단에서 선발</li> <li>○(기능) ICT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밀착 지원(ICT 카페운영, 모바일POS 활용교육, 스마트전단지 제작, 웹사이트 구축 등)</li> <li>○(활동비) 추진단 소속 인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지원(전액국비)</li> </ul>

[별지 2] 지자체 작성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신청 총괄표 (지자체용)**

우리 ( ) 시·군·구에서는 2014년도 경영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우선 순위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신청 단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상인 자부담
총계	개 시장	개 사업					

\* 추천 시·군·구에서는 신청시장과 세부 신청사업 대한 상기 전체 총괄표를 작성하시고 자체 활성화계획에 따른 우선순위 기재요망

[별지 3] 상인회 작성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통합 신청서 (상인회용)**

<b>시 장 정 보</b>	시 장 명			
	개 설 일		등 록/인정일	
	대 상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input type="checkbox"/> 상점가 <input type="checkbox"/> 활성화구역		
	소 재 지			
	점 포 수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종 사 자 수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상인회가입률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상 인 회 비 률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률(    )%			
<b>상인회 정 보</b>	상 인 회 명		등 록 일	
	전 화		팩 스	
	상인회장성명		핸 드 폰	
	실무자성명		핸 드 폰	
<b>지자체</b>	담 당 부 서		담당자 확인	(인)
	전 화		팩 스	
<p>위와 같이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p>				
<p>위와 같이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신청을 추천합니다.            2014년    월    일            (                      ) 시·군·구                      (인)</p>				
<b>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b>				
<p>첨부양식 : &lt;별지 3-1&gt;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통합 신청 총괄표            &lt;별지 3-2&gt;~&lt;별지3-5&gt; 중 해당 신청사업 계획서 각 1부</p> <p>제출서류 : 1.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2.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p> <p>※ 시장 입증서류 및 상인회 입증 서류를 기존에 제출하여 사업에 참여했고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p>				

<별지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신청 총괄표**

1. 사업 신청내역[통합]

구분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시장매니저	ICT전통시장
신청여부				

\* 신청사업에 ○표 하세요.

2. 사업별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신청금액				실시기간	주요 추진내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계						

세부 사업명	실시기간	신청인원(명)
상인대학		

세부 사업명	주요 추진내용
ICT전통시장	

\*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만 작성.

<별지 3-2> 공동마케팅 지원 신청용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계획서**

시장명	
-----	--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	※ 단위사업 통합하여 한 장으로 작성			
사업명	※ 다수의 단위사업 시행 시 모두 기재			
사업목적	※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시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사업내용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추진일정	※ 단위사업별로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 단위사업별 세부 산출내역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단 위 사업명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단위: 원)	비고
사업 1				
	소 계 (1)			
사업 2				
	소 계 (2)			
사업 3				
	소 계 (3)			
총 계 (1+2+3)				

- 주 : 1) 5개 단위사업 중 시행희망사업 선택하여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2) 기획료, 제작비, 인건비, 홍보비, 장치비, 공연료 등에 대해 세분하여 작성  
 3)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견적서, 관련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4) 사업비 산출근거는 정산시 명확한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갖출 수 있어야 함

<별지 3-3> 상인대학 개설 신청용

## 상인대학 설치 신청서

시장명	
-----	--

□ 신청개요							
<b>과거 개설실적</b>	개설연도	년	년	년	년	년	총 회
	졸업생수						총 명
<b>교육환경</b>	교육장소	명칭:			면적(    m <sup>2</sup> )	수용인원(    명)	
	교육시설	□ 책상(    )개, □ 의자(    )개, □ 음향시설(마이크 등) □ 빔프로젝트, □ 스크린,                      □ 냉방시설 없는 경우 확보대책					
<b>시장환경</b>	※ 시설, 경영수준, 고객 수, 상권활성화 정도, 상품, 주변여건등 간단히 기재						
<b>신청사유</b>	※ 우리 시장이 왜 이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b>중점교육 희망내용</b>	※ 수강희망 교육내용을 기술						
<b>추진일정</b>	교육시작일	주당교육일수(요일)			교육희망시간		
	월 일 부터	회, (    )요일			시부터(오전, 오후)		
<b>신청인원(명)</b>	총 상인수		교육신청 상인수			신청비율(%)	
<b>기대효과</b>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 활성화 효과 기재  ※ 사업종료 후 성과분석을 통해 기대효과 달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						
<b>기타사항</b>							

<별지 3-4>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지원신청용

## 시장매니저 활용계획서

시장명	
-----	--

<input type="checkbox"/> 신청개요				
기 지원실적	<input type="checkbox"/> 2008년, <input type="checkbox"/> 2009년, <input type="checkbox"/> 2010년, <input type="checkbox"/> 2011년, <input type="checkbox"/> 2012년, <input type="checkbox"/> 2013년	총	회	
상인회 근무환경	사무공간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면적 : _____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무기기	<input type="checkbox"/>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프린터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책결상 <input type="checkbox"/> 복사기 <input type="checkbox"/> 팩스		
상근직원 현황(기존)	○ 총원 _____ 명(자체고용 _____ 명, 정부·지자체등 지원 _____ 명)			
	구분	인원(명)	담당업무	급여 자부담액 (천원)
	지원인력 (정부, 지자체)	시장매니저		
	자체고용	사무인력 기타		
	계			
시장매니저 인적사항 (채용희망)	성명		나이	만 세
	관련경력 * 5년 이상만 기재하고 초과경력 생략	근무처	담당업무	기간(년)
		계		
	PC 활용도	수준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PC 자격증명
	관련교육(학위), 자격증 등			
시장매니저 활용계획	기본업무			
	현안업무			
	활용목표			
	정부지원 종료후 자체 고용계획	<input type="checkbox"/> 자체 고용 <input type="checkbox"/> 고용중단(사유: _____ )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대효과				

<첨부> 시장매니저 예정자용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 시장매니저 예정자용

# 이 력 서

사 진	인 적 사 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E - 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 재 지	학 위

자 격 및 면 허	자격증명	급수	취득년월일	검정기관

경 력 사 항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수 상	수상일자	수상기관	상격	비 고

\* 최근 경력순으로 기재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자 기 소 개 서

주요경력	
응모사유	
근무예정 시장현황	
매니저 업무목표	
기타	

[별지 4]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신청지회	지 회 명		지역시장수	개 시장
			회원시장수	개 시장
	지 회 장		연 락 처	휴대폰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휴대폰 :
시·도 담당자	시 도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휴대폰 :
개최시기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개최장소				
소요예산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위와 같이 「2014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 ) 상인연합회장 (인)				
위와 같이 「2014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사업신청을 추천합니다. 2014년 월 일 ( ) 시장·도지사 (인)				
<붙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사업계획서 1부				
<b>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b>				

<첨부>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사업명칭

- “제0회 00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사업목적

- \*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기술

전시 일정 및 장소

- \* 전시회 개최일정, 개최장소, 전시면적 기술

사업내용

- 

사업예산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대효과

- \* 사업의 기대효과 기술

사업추진계획(일정)

- \* 사업착수 및 완료예정일,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등 기술

기타

## 2. 세부 운영계획

### 전시관 구성 계획

\* 전시관 구성 및 배치 계획 등 기술

### 전시상품 선정계획

\* 전시상품의 조달 및 선정 계획 등 기술

### 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 전시행사, 부대행사, 이벤트공연 등 운영 프로그램 기술

### 전시상품 판매확대 계획

\* 전시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계획 등 기술

### 관람객 유치계획

### 홍보계획

### 기타

\* 위 항목별로 기재하되, 필요시 기타 추가적인 내용 기술

## 4.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단가	금액	비고
계				

<작성방법>

\* 기획료, 행사비, 제작비, 인건비, 홍보비, 인쇄비, 장치비, 운영경비 등 항목 구분 작성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정산시 명확한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갖출 수 있어야 함

### 유사사업 실적

\* 상품전시회와 유사한 사업 실적 기술

### 참고자료

\*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별지 5]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신청용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b>시 정 장 보</b>	시 장 명			
	개 설 일		등록/인정일	
	대 상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input type="checkbox"/> 상점가 <input type="checkbox"/> 활성화구역		
	소 재 지			
	점 포 수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영업점포 및 빈점포는 2013년 전통시장 경영실태조사 적용, 상인회의 인정을 받은 노점에 대하여는 상인회비 납부 증빙자료 제출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종 사 자 수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상인회가입률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상 인 회 비 납 부 른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률( )%			
<b>상 인 회 정 보</b>	상 인 회 명		등 록 일	
	전 화		팩 스	
	상인회장성명		핸 드 폰	
	실무자성명		핸 드 폰	
<b>시 군 구</b>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 화		팩 스	
위와 같이 「2014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 )시장 상인회장 (인)  ( )시, 군, 구청장 (인)				
위와 같이 「2014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장으로 추천합니다. 2014년 월 일  ( ) 시, 도지사 (인)				
<b>[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b>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지방비 지원 협약서 1부				

※ 2개 이상 시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시장을 반드시 지정하여 신청바랍니다.

<첨부>

## 2014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계획서

■ 시장명 :

2014.

상인회명 : 인

지자체명 : 인

## 1. 사업개요

### 사업추진 배경

- 

### 사업의 목표

- 

### 사업추진 전략

- 

### 중장기 발전계획

-



## 2. 시장 고유의 특성

### □ 상세정보

#### ○ 품목비율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소매업	합계
점포수									
비율(%)									

#### ○ 상인현황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종사자수									
비율(%)									

####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 영업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년매출액(백만원)				
일별 이용객수(명)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 시장의 특성(강점)

### ○ 역사적 특성

\* 시장의 생성배경, 역사적 사실 등을 기술(참고용 사진 첨부 가능)

### ○ 문화적 특성

\* 시장 고유의 문화적 특성 기술(참고용 사진 첨부 가능)

### ○ 관광자원

\*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지역 관광자원 소개(참고용 사진 첨부 가능)

### ○ 특산품

\* 먹거리, 살거리, 브랜드상품 등으로 개발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각각의 강점 기술(참고용 사진 첨부 가능)

## □ 기반인프라 시설 현황

### ○ 편의시설

\* 아케이드, 화장실, 주차장, 고객센터 등의 현황(참고용 사진 첨부 가능)

### ○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규모에 관계없이 현재 활용중인 공간과 향후 개발 가능한 공간(빈점포 등) 등에 대해 위치와 활용방안 기술(참고용 사진 첨부 가능)  
예시) 실내, 야외무대, 공연장, 이벤트 광장 등 포함

### 3. 시장 입지 및 환경

#### □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

- \* 시장과 연계하여 관광프로그램 개발가능성 측면에서 기술(연간 방문객, 연계방안 등 기술)

#### □ 지역 축제 현황

- \* 시장과 연계하여 홍보, 이벤트 개최 등의 프로그램 개발가능성 측면에서 기술(연간 방문객, 연계방안 등 기술)

#### □ 지역 상권현황

-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및 성장 잠재력 기술

#### □ 시장 접근성

- \* 대중교통 등을 통한 접근 편의성 중심으로 기술

※ 주변지역 현황(지도 및 사진) 자료 첨부

#### 4. 시장의 사업추진 역량

##### □ 최근 3년(11년 이후) 사업현황

###### ○ 시설현대화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광역	기초		

###### ○ 경영현대화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광역	기초		

##### □ 상인조직 현황

###### ○ 상인회 조직도

\* 조직도 및 구성원 역할분담

○ 상근인력 운영현황

\* 직종별 상근인원수, 직위, 근무년수, 업무 등 역할(상인 겸직인원은 별도 표기)

○ 정부정책 참여 현황

\* 온누리상품권 유통 활성화, 고객선지키기 등 정부정책에 대한 운영사례

○ 상인회 활동내역(자체사업 추진 현황)

\* 당 시장 고유의 행사, 이벤트, 홍보, 수익사업 등의 내용과 성과

\* 홈페이지, 블로그, 스마트앱 운영 현황 및 성과

○ 수익사업 현황

\* 현재의 운영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등

○ 기타 대외활동

\*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현황 및 시장방문의 날 행사 등

## □ 재정 현황

### ○ 월 수입 현황

\* 항목별 구분(예시 : 회원수입, 기부금, 지원금, 수익사업, 기타 등)

### ○ 월 지출 현황

\* 인건비, 사업비(시설보수비 포함)

## 5. 지자체의 추진 의지

### □ 지방비 확보 방안

- \* 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광역/기초 비용 구분))
  - 1차년도는 시장규모와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별 국비 지원금액 산정

## □ 시장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 자체사업

\* 지역 관광문화축제 등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등 제시

### ○ 중장기 활성화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시설	내용						
	예산						
경영							

\* 시설 : 향후 5년동안 지원계획 작성

경영 : 문광형사업(2~3년)의 신청예산, 3년이후는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계획

## 6. 사업의 기대효과

### □ 정성적 효과

\* 시장활성화 가능성(예상가능한 분석결과)

### □ 정량적 평가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3개년 기준)

예시 : 매출액 : 2014년 (     백만원), 2015년 (     백만원), 2016년 (     백만원)

          고객수 : 2014년 (     명), 2015년 (     명), 2016년 (     명)

# <2014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1. 제출서류

- 1) 제출 방법 : 대상별 참조
- 2) 사업 신청서
  - 인쇄물 10부(A4용지 크기 인쇄)
  - File 제출(CD 또는 USB 등 저장매체) 2매
    - 본문 및 file로 작성된 별첨서류 포함

##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 아래 본문에 제시한 양식에 의거 작성(임의 변경 지양)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파일저장방법 : 지자체명, 시장명으로 하되 파일명 총 12자 이내  
(예) ○○○○\_○○○○(지자체명\_시장명).hwp
- 신청서 분량 : 가급적 최소화

## 3. 신청서 작성요령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자료산정(data)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3. 12월 기준
- 목차 및 페이지(page)를 기재
- 문체는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간단한 증빙자료는 신청서와 1권으로 제본하되, 분량이 많은 자료집 등은 첨부자료로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확 약 서

우리 \_\_\_\_\_시(도) 및 \_\_\_\_\_시(군, 구)는 \_\_\_\_\_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  
시장으로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1·2년차 50%, 3년차  
70%)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인)

시·도지사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신청접수처

순번	지방청명	연 락 처	주 소
1	서울 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20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공공판로지원과
2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25	(우) 618-27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공공판로지원과
3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7	(우) 704-8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공공판로지원과
4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43	(우) 502-200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공공판로지원과
5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32	(우)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공공판로지원과
6	인천 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4	(우) 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기업환경개선과
7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41	(우)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기업환경개선과
8	강원 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21	(우) 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기업환경개선팀
9	충북 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11	(우)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창업성장지원과
10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3	(우)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기업환경개선팀
11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49	(우)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기업환경개선팀

# [별지 6]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2.11.30>

## 상권활성화구역 [ ] 지정 [ ] 변경 승인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 기관	지자체명	기관장 성명
	담당부서	부서장(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구역 개요	구역 명		
	구역지번 및 면적	지번	
		대지 (㎡)	건물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내 시장 명		
	사업목적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조사서</li> <li>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li> <li>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li> <li>4. 구역 지정의 효과</li> <li>5. 구역경계도</li> <li>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li> <li>7. 상권관리기구 운영 계획서</li> <li>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li> <li>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li> <li>10. 주민의견서</li> </ol>	수수료 없음
------	---	-----------

1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2]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운영계획서**

「상권활성화구역 신청을 위한」  
**사 업 운 영 계 획 서**

20 . . .

작성부서	
------	--

##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요령

1. 분량은 A4(13포인트)용지 20쪽 내외(겉 표지 제외)로 작성
2. 신청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할 것
3. 간단한 참고자료나 이미지·도표 등은 본문에 삽입하고,  
분량이 많은 관련 참고자료는 사업계획서 뒷편에 첨부할 것
4. 제시 자료의 현실성을 담보토록 할 것(제시자료의 허위, 비현실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지원대상 선정시 불이익 예상)
5.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상세한 요령은 서식 내 설명을 참고하고  
서식 외 추가적인 자료작성 가능함

## □ 사업운영계획서 목차

- 요약서
- 목 차
- 본 문

### 제1장 신청기관 개요

#### 1.1 신청기관 개요

### 제2장 기초조사서

#### 2.1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 2.2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 제3장 구역 지정(변경) 신청 사유서

#### 3.1 구역 지정(변경) 사유

### 제4장 구역 경계도

#### 4.1 구역 경계도

### 제5장 사업내용

#### 5.1 상권활성화사업

### 제6장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6.1 사업예산 및 조달계획

### 제7장 구역 지정의 효과

#### 7.1 구역 지정의 효과

### 제8장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 8.1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 제9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 9.1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

### 제10장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10.1 회의록

### 제11장 주민의견서

#### 11.1 주민의견서

## 제1장 신청기관 개요

### 1.1 신청기관 개요

지자체명	
기관장 성명	
기관 주소	
담당부서	
담당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름 :</li> <li>▪전 화 :</li> <li>▪이메일 :</li> </ul>
실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름 :</li> <li>▪전 화 :</li> <li>▪이메일 :</li> </ul>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추가 가능

## 제2장 기초조사서

### 2.1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해당 구역에 포함된 시장 또는 상점가 개요	※ 대상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지도 등 첨부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 예정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업지역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점포 수	※ 상권활성화구역 내 점포 수(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요건 충족)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이상
상업활동 위축여부	※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요건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인구·사업체수(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가 신청일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모두 2년간 계속 감소하여야 함에 유의)

### 2.2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 인구, 산업, 상업, 토지이용 현황, 공간 등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상권특성, 상권쇠퇴 현황 등 대상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

## 제3장 구역 지정(변경) 신청 사유서

### 3.1 구역 지정(변경) 사유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사유를 기술하고, 필요성 서술
-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중심으로 기술
- 최근 2개년간 매출액 변동사항, 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해 기술

## 제4장 구역 경계도

### 4.1 구역 경계도

구분	내용
위치	**시 **동 ** 일대
종합 위치도	※ 상권활성화구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
면적	
특성	※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

## 제5장 사업내용

### 5.1 상권활성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추진주체	
위치도	
계획기간	
예산규모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 ※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내용을 계획한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
- ※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추진방향의 우수성이 부각되도록 작성



## 5.2 상권활성화사업 세부 프로그램

※ 상권활성화사업 세부 프로그램을 각 항목별, 세부진행사항, 세부 프로그램 예산, 운영방안, 기대효과 등을 제시

## 5.3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전략

※ 상권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한 전략을 각 부문별로 제시할 것

# 제6장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6.1 사업 소요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시설	사업명	0000	0000(%)	국비 20% 이내
경영				
조직				
기타				

※ 민간경상보조금(국비 6억원)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 6.1-1 연차별 사업 소요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액	
시설	사업명					국비 20% 이내
경영						
조직						
기타						

※ 민간경상보조금(국비 6억원)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 6.2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총액
시설	사업명	-	0000(%)	0000(%)	0000(%)	국비 20% 이내
		-				
경영						
조직						
기타						

※ 민간경상보조금(국비 6억원)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 6.2-1 연차별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예산 조달내역								
		1차년도				2차년도				.....
		국비 (%)	광역 (%)	기초 (%)	자부담 (%)	국비 (%)	광역 (%)	기초 (%)	자부담 (%)	
시설	사업명	-				-				국비 20% 이내
		-				-				
경영										
조직										
기타										

※ 민간경상보조금(국비 6억원)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 제7장 구역 지정의 효과

### 7.1 구역 지정의 정량적 효과

수치목표	현황	1차 목표년도	2차 목표년도	3차 목표년도	4차 목표년도	최종
예) 유동인구	0000명					

※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할 것

## 7.2 구역 지정의 정성적 효과

※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정성적 기대효과(인지도 증대, 이미지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사업추진 유관한 효과를 제시할 것

## 7.3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

# 제8장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 8.1 사업추진체계

## 8.2 상권관리기구 구성계획

※ 조직성격(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방법(참여 관계자), 조직원 구성 방법, 지자체 참여 방법, 상권 활성화협의회 구성 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자금 확보 방법, 채용 예정인 타운 매니저 이력 등에 대해 기술

## 8.3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 상권관리기구 인력운영, 협의체 운영, 예산집행, 마케팅, 각종 행사 등 관리기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제시

## 8.4 지자체 전담조직 현황

# 제9장 관련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향후 연계 계획

## 9.1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연번	관계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고
1				
2				
3				

## 9.2 관련 중앙정부 정책 연계 활용계획

# 제10장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10.1 회의록

# 제11장 주민의견서

## 11.1 주민의견서

[별지-1]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요령

1) 기초조사서

- 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기초조사서는 인구·산업(특히 상업)의 현황, 토지이용 상황 등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중에서 당해 시·군·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나.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방법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다.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라. 타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마.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바.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하여 인접한 지역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아. 기초조사를 통하여 각 해당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자. 기초조사서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해당 구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 해당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 해당 구역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활용
  - 해당 구역과 인접지역의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 2) 구역지정 신청(변경) 사유서

- 가. 구역지정 신청(변경) 사유서에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나. 신청대상지 주변지역의 관광지 등과 같은 집객력 있는 요소와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다. 최근 2개년도 이상의 매출액 변동사항, 종사자 규모,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가. 민간경상보조금(국비 연 6억원)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 나. 소요예산은 가능한 단기목표계획과 중기목표계획을 구분하며, 조속히 필요한 사항은 단기목표계획으로, 해당 구역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기목표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다. 해당 지자체가 비용부담이 많은 사업부터 단기목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구역지정 효과서

- 가. 구역지정 효과서는 상기 기초조사서를 통해 설정한 활성화 지표를 활용하여 수치지표의 추이를 사업계획 기간의 매년도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5) 구역경계도

-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과 지적이 포함된 축적 1:1,000 이상의 지형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시·군·구의 규모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적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상권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나, 반드시 상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만을 구역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아닌 용도지역도 일부 포함 할 수 있다.

## 6) 개략적인 상권활성화 사업 내용

- 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을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비용, 재원조달 방안,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 가.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비용 조달계획, 직원 및 타운매니저 채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상권관리기구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그 구성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 8)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 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또한 기타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

- 가. 구역 내에 존재하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이 해당 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변경) 신청을 요청한 경우, 해당 상인조직의 총회 기록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0) 주민의견서 및 동의서

-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에 있어 해당 구역 내 상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주민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며, 구역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 주민의견 조사의 방법과 시기
  - 응답자 성별, 나이, 사업자·종업원·관계자 형태, 매장의 소유형태, 매장 규모, 매출규모 등
  -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상인의 찬성 수 및 반대 수
  - 해당 활성화구역의 시급한 개선사항 등
- 다. 구역지정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 양식은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의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현장평가지 징구한 동의서를 평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2.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1) 사업계획

- 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을 계획한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구체적인 사업비용, 자원조달 방안,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사업계획 기간은 3개년도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 2)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 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또한 기타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상권관리기구 세부 운영계획서

- 가.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 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비용 조달 계획, 직원 및 타운매니저 채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상권관리기구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그 구성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주민의견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와 동일한 것을 첨부할 수 있음. 단,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7] ICT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ICT전통시장 육성 지원신청서**

시장명					
고객센터 (상인교육장)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면적	m <sup>2</sup>	PC보유 (고객용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    대) <input type="checkbox"/> 없음

신청개요

신청사유	※ 우리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 기술
추진일정	※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단위사업별 추진일정 기술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기타사항	※ 상인회 운영현황 등 기재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